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0. 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호)

나.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4 ~ 10. 9(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

민을 우선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
- ④ 비용 지원은 1가구 1대에 한하며 구입가격의 20%로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 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 ⑥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u> <u>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u> <u>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u> <u>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u>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제19조의2(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예산의 범위</u>
2. 3. (생략) <u><신설></u>	

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

④ 비용 지원은 1가구 1대에 한하며 구입가격의 20%로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⑥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